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77)

I. 사회·정치개혁 관련 (7)

- 1-01 참여정부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 1-03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
- 1-05 포괄적 과거사 정리
- 1-07 언론분야 개혁
- 1-02 사법제도 개혁
- 1-04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 1-06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

II. 정책추진 관련 (47)

경제분야 (17)

- 2-01 부동산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 2-03 신용불량자 대책
- 2-05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07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2-09 농업 농촌 종합대책
- 2-11 자율 관리 어업 정책
- 2-13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 2-15 향만인력 공급체제 개혁
- 2-17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확산
- 2-02 금융시장 안정
- 2-04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
- 2-06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2-08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 2-10 쌀협상과 양정개혁의 완성
- 2-12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정리
- 2-14 선진한국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 2-16 해외자원 확보 경쟁

사회분야 (24)

- 2-18 노인복지 정책
- 2-20 기초생활 보장 강화
- 2-22 주민 서비스 혁신
- 2-24 건강보험 개혁
- 2-26 안정적 자녀 양육 지원
- 2-28 여성인력개발
- 2-30 차별시정 강화
- 2-32 노사관계 개혁
- 2-34 교육격차 해소
- 2-36 사립학교법 개정
- 2-38 2008 대입제도 개선안
- 2-4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 2-19 장애인 정책
- 2-21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아동정책
- 2-23 국민연금 개혁
- 2-2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 2-27 호주제 폐지
- 2-29 성매매 방지
- 2-31 비정규직 보호
- 2-33 일자리 창출
- 2-35 교원평가제 도입
- 2-37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 2-39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 2-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통일외교분야 (6)

- 2-42 참여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정
- 2-44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
- 2-46 국방개혁 2020
- 2-43 남북관계 발전
- 2-45 글로벌정상외교
- 2-47 이라크 파병의 성과와 교훈

III. 정부혁신 관련 (21)

- 3-01 정부혁신의 확산과 관리
- 3-0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 혁신
- 3-05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 3-07 기록관리 혁신
- 3-09 참여정부 인사혁신
- 3-11 고위공무원단도입과 공직개방
- 3-13 균형인사 정책
- 3-15 제주특별자치도
- 3-17 교육자치 정책
- 3-19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 3-21 새로운 도전, 국가위기관리
- 3-02 정책품질 관리체계의 마련
- 3-04 정부조직과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 3-06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
- 3-08 온나라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10 정무직 및 공공기관 인사시스템 혁신
- 3-12 공무원 성과관리 및 훈련시스템 확산
- 3-14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 3-16 자치경찰제 추진
- 3-18 주민 직접 참여제도
- 3-20 정책홍보시스템 혁신

IV. 청와대 개혁관련 (2)

- 4-01 대통령비서실의 변화와 혁신
- 4-02 국정과제위원회의 설치와 운용

장 애 인 정 책

-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발 간 사

참여정부가 혁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저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혁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절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급적 상세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중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과정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대 비서관실별 집필 T/F팀과 정책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전·현직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과 비서관, 전·현직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접 또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절과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외 소중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중심의 기록은 '사적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중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적 곡해를 바로 잡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줄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외 소중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혁, 정책추진, 정부 혁신, 청와대 개혁 등 4개의 대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대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혁 분야 7개 과제, 정책추진 관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혁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대 개혁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대 각 비서관과 담당 행정관,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집필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물론 국정과제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제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전·현직 장차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적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현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전·현직 공직자,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전 과제를 PDF 파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대 브리핑 및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금 이 순간, 정책과정 중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대로 읽혀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조언,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김 병 준

- 목 차 -

제1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1
제1장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	2
1.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구	2
2. 늘어나는 고령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3
3.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 증가	3
제2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4
제3장 장애인 정책의 발상의 전환	6
1.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장애인 중심의 정책 전환	6
2.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발표	7
제2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	11
제4장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며	11
제5장 장애인 지원제도가 개선되기까지	13
1.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	13
2. 끊임없는 제도 개선 과정 :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	15
3.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과의 의견수렴 노력	18
4. 험난한 여정의 마침표	23
제6장 LPG 지원제도 개선의 성공 요인	26
제7장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29
제3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30
제8장 우리 사회의 장벽, 장애인차별	30

제9장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벽을 허물자!	33
1. 장애인 단체로부터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33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거센 반대	35
3. 갈등의 고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인정하라	37
4. 또 하나의 분수령, 민·관공동기획단의 활동	38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	49
제10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참여정부의 역할	54
제1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진 의미와 과제	55

제4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

제12장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성과와 한계	57
1. 결실을 맺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7
2. 기존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한계의 노출	59
제13장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새로운 장애인고용정책	67
제14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과제	68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재설계의 출발점 - 중증장애인	68
2.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서비스 전달체계	69
3.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74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78

제5부 장애인정책의 평가와 미래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0
---	----

제 1 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한 사회의 성숙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사회가 소외계층을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소외계층에는 빈곤계층,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은 차별을 받아온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회의 성숙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정도를 살펴볼 때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아픔을 겪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일례로 20~64세의 근로연령층 장애인이 1명 이상 있는 장애인가구 가운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무려 29.7%나 된다는 사실은 장애인들의 빈한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러한 고단한 삶이 더 이상 당연시되고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소외되고 배척되어 온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장애인을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통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는 정책보다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하면서 장애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가 장애에 적응토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더하여 장애인을 능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토록 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형성자의 관점이 아닌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진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당연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제1장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

1.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구

최근 장애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105만 3천명이었던 장애인이 2000년에는 144만 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214만 8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장애인 출현율도 1995년 2.37%에서 2000년 3.09%로, 2005년에는 4.59%로 증가하였다. 2000년 대비 2005년 장애인구의 단순증가율은 48.2%에 이르고, 이 기간 중 장애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2%에 이른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010년에 300만 명을 넘고, 장애인 출현율¹⁾도 2010년에 6% 이상, 2015년에는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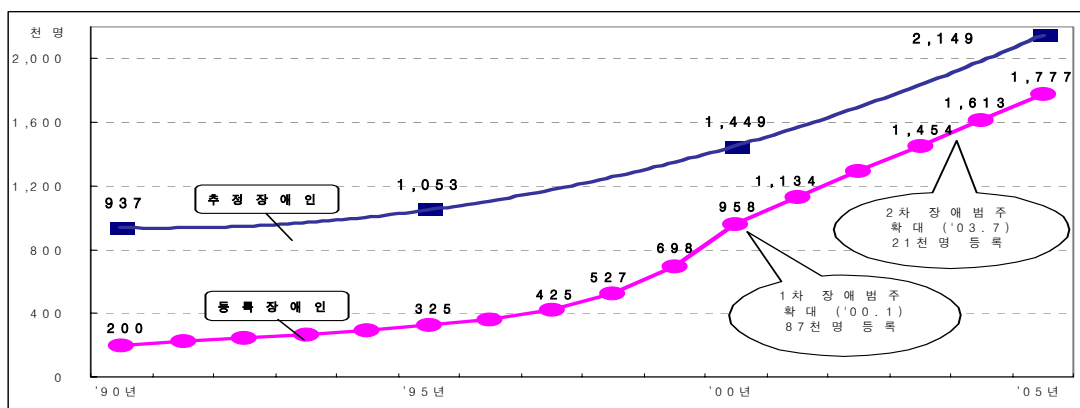
〈표 1-1〉 전국 추정 장애인수

(단위 : 명, %)

연도	출현율	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2000	3.09	1,449,496	(100.0)	1,398,177	(96.5)	51,319	(3.5)
2005	4.59	2,148,686	(100.0)	2,101,057	(97.8)	47,629	(2.2)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그림 1-1〉 추정장애인 및 등록장애인의 증가 추이



1) 장애인 출현율은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의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를 의미한다.

2. 늘어나는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현재 장애인구는 규모의 증가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령 장애인 출현율은 2005년 현재 15.8%로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2000년 40만 3천명이었던 중증장애인 수가 2005년 68만 2천명으로 상당폭 증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의 절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²⁾. 이러한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와 그에 동반한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는 욕구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욕구의 복합성과 다양성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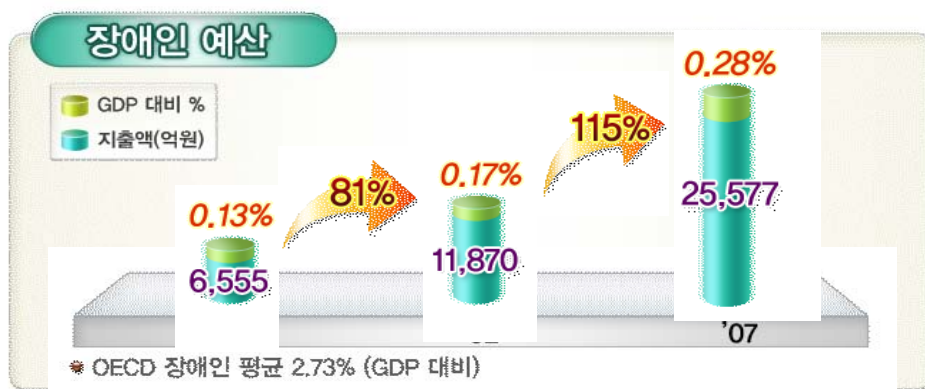
3.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 증가

최근 장애인 정책에서 새로운 요구가 증가하는 것은 이처럼 욕구의 양과 욕구의 복합성 및 다양성의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요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자립생활운동 및 그와 연관된 활동보조인제도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의 소득보장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도 미진한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수요의 증가는 장애인 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전통적 요구와 함께 새로운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구분은 등록장애인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장애인구 전체가 아니라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중을 말한다. 2005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77만 7천명이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부 기준과 노동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부 기준을 사용하였다. 복지부 기준을 사용할 경우 2005년 중증장애인은 53만명으로 29.8%에 이른다.

제2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이와 같이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배분되는 절대적인 자원이 매우 적은 편이다. 2007년 예산기준으로 장애인 정책 총지출은 2조 6천억원으로 이를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28%로 참여정부 이전보다 그 액수와 증가율은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장애인 예산 평균인 2.73%과 비교해 볼 때,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2-1〉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GDP (억원)(A)	정부총예산 (억원)(B)	장애인정책 예산		
			금액(억원)(C)	C/A (%)	C/B (%)
2003	7,246,750	1,870,794	14,164	0.19	0.76
2004	7,784,446	1,961,546	17,797	0.23	0.91
2005	8,158,099	2,086,444	19,367 (21,126)	0.26 (0.26)	0.93 (1.01)
2006	8,769,957	2,220,024	22,612 (24,371)	0.26 (0.28)	1.02 (1.10)

주 : 2005년과 2006년의 괄호 안의 수치는 지방이양사업을 포함한 경우임

자료 : 기획예산처, 2006.

<표 2-2> OECD 주요국의 장애인관련 지출

구 분	OECD 주요국						OECD 평균 ²	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GDP대비 %	4.66	3.08	1.67	1.83	1.54	1.40	2.73	0.26

주 : 1. OECD 국가는 1999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기준, 한국은 2006년 기준

2. OECD 평균은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OECD 19개국의 평균임

3. 우리나라의 지출에는 보건복지지출이 포함되나 OECD 지출에는 미포함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06.

자원량의 절대적 부족은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절대적 부족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들 가운데 재가복지서비스 희망자는 65.8%인데 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받고 있는 서비스경험자는 11.6%에 불과하며, 재활병·의원 이용희망자는 40.1%인데 비해 재활병·의원 이용경험자는 3.6%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고용관련서비스 희망자는 31.7%인데 비해 이 서비스의 경험자는 8.1%에 불과하다. 특수교육 역시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희망자는 14.1%이지만 경험자는 6.9%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자원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더하여 미비한 장애인 서비스전달체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의무고용제도를 보면 의무고용제도에 의해 취업한 장애인은 2005년 말 기준 6만 2천명으로 20~64세 경제활동장애인 77만 3천명의 8.0%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1만 3천명과³⁾ 보호고용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약 8천명을 합쳐도 그 비중은 20~64세 경제활동장애인의 10.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나머지 거의 90%에 이르는 장애인들은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취업했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것이다. 의무고용제도와 직업재활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들 90%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의무고용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04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제3장 장애인정책의 발상의 전환

1.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장애인 중심의 정책 전환

장애인구 규모의 증가와 장애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적 수요의 등장 등 앞에서 살펴 본 장애인 정책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의학적 모형과 사회적 모형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의학적 모형이란 장애는 장애(신체적·정신적 손상)를 가진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이 가진 장애(신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훈련 등을 통해 회복하거나 잔존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 재활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반면에, 사회적 모형이란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가진 개인에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때문이 아니라 그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활”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곧 “사회”인 것이다. 장애인정책을 사회적 모형에 입각하여 재편하는 문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80년대에 UN 장애인 10년, 1990년대에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계획 등을 통해 사회적 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 2001년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개념을 개인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활동 및 참여의 제약, 그리고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⁴⁾

이 개념에 의하면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이 가진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에 초점을 두는 의학적 모형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물리적·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모형을 병행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모형은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4)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약자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구조 및 기능, 활동 및 참여, 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적절히 갖추어진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는 점에서 인권증진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이념조류와도 조화롭다. 또한, 사회적 모형은 장애인을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조건만 주어진다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동적 잠재력의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사회투자국가의 이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환경변화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하지만 환경변화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용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새로 놓을 때 비용이 들지만 일단 다리가 놓이고 나면 다리를 건너는 데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다리를 통해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생산적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발표

2006년 6월 28일과 2007년 4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모형에 입각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흐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관료들 그리고 뜻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모형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본격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과 장애인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이 함께 포함되었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크게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 혁신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기본구상



가.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의료접근성 제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 주거지원, 고용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특히 소득보장에서는 기존 장애수당의 대상자와 지원액을 크게 늘려 장애인 소득보장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보장에서는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치 등 재활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보장에서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거보장에서는 기존 공급계획주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 주거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고용지원체계 혁신에서는 통합고용지원팀 구축 및 직업재활시설 재분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직업요구를 고려한 고용지원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핵심이 되는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에서는 이동권 보장, 자막방송 확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 보조공학서비스 체계화 및 여성장애인 지원 등의 대책을 포함하였으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진을 포함한다. 이동권 보장과 자막방송 확대 등은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킬 것이며, 활동보조인서비스 확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큰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조공학서비스 체계화는 복지와 산업의 접목을 위한 토대를 놓을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장애인 지원대책은 여성장애인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여성장애인은 이중차별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계가 2000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이것이 도입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나머지 정책들도 영향을 받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 혁신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 혁신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되는 장애판정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며, 둘째, 장애인의 욕구와 정책자원 간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애인정책 추진시스템은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대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대책 모두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되는 대책이다. 의학적 모형에 입각한 정책이든 사회적 모형에 입각한 정책이든 장애인의 욕구와 자원 간의 적절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 정책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장애인을 위한 정책 중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장애인 고용제도 등 참여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였던 과제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과 동시에 우리사회가 사회적 모형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분야는 장애인 자립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정책들이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을 담보하고자 한다.

제 2 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

제4장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며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동에 따르는 제약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소득수준이 낮고 실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동의 불편으로 소득 활동 등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경제력이 약한 장애인은 이동을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교통 요금의 부담으로 되어 이동권이 약화되어 더욱 약해지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제력은 더욱 약해지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및 사회 환경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이동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 국민의 정부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차량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고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IMF 이후 LPG연료를 사용하는 7~10인승 레저용 차량(Recreational Vehicle 이하 RV 차량)이 급증하면서 LPG 소비량이 급증하였고 이는 곧 정부의 세수감소와 무역수지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1996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레저용 차량이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LPG 사용 불가방침이 결정된 후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꿔 일반승용차 LPG 사용제한을 철폐하는 대신 휘발유 가격 수준에 맞춘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으로 LPG에 세금(특별소비세,교육세 및 판매부과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인상시켰다. ※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은 휘발유가격:경유가격:LPG가격을 100:80:50을 목표로 조정.

LPG 가격인상이 장애계의 반발을 불러오자 정부는 장애인 승용차용 LPG 구입비용 중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게 되었다. 대상 차량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경형승합차와 이와 외형이 동일한 경형화물차이다.

이 같은 장애인 등록 자동차의 LPG 사용 허용 및 LPG 구입비 지원 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주로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 제도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인 제도로써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으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장애인 승용차 보유율 및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LPG 지원사업의 예산이 급격히 증대하여 여타 장애인 지원대책을 위한 재정에 까지 부담을 초래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보다는 형편이 나은 장애인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LPG 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이 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LPG 지원제도의 축소는 곧 장애인 복지의 축소라고 인식하는 장애계의 반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LPG 지원제도의 개편이 필요했으나 장애계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한 정부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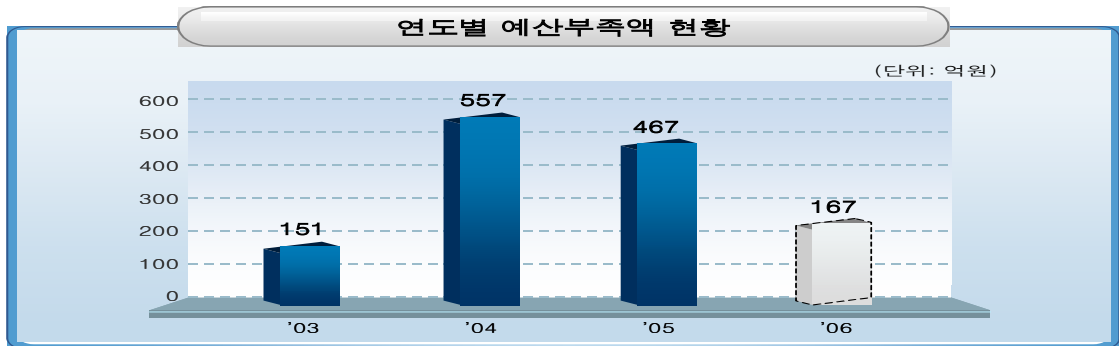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LPG 지원제도의 개편 작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방향을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진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5장 장애인 지원제도가 개선되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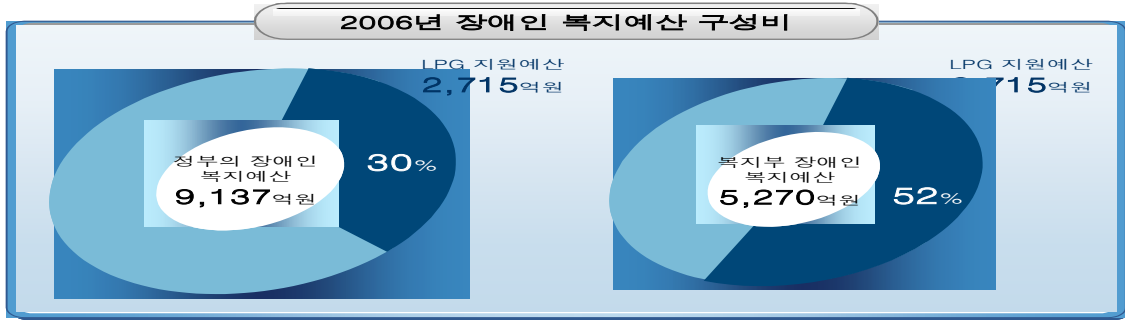
1. 장애인 LPG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

장애인 LPG 지원제도는 2001년 7월 에너지 세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LPG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LPG 충전에 따른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월 최대한도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되었으나 부정수급자 발생, 국가의 재정부담 과중 등으로 2004년 12월부터 한 달에 최대 250리터까지로 지원한도를 줄이게 되었다. 이후 LPG 지원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장애인 복지 시책 중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LPG 차량은 예상외로 급속히 증가했다. 장애인 LPG 보조금이 처음 지원되기 시작한 2001년 장애인 LPG 차량은 19만 5천대였으나, 2006년에는 무려 47만대를 넘었고, 지원예산도 2001년 137억원에서 2006년 2,715억원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2003년 151억원 이후 매년 수백억원씩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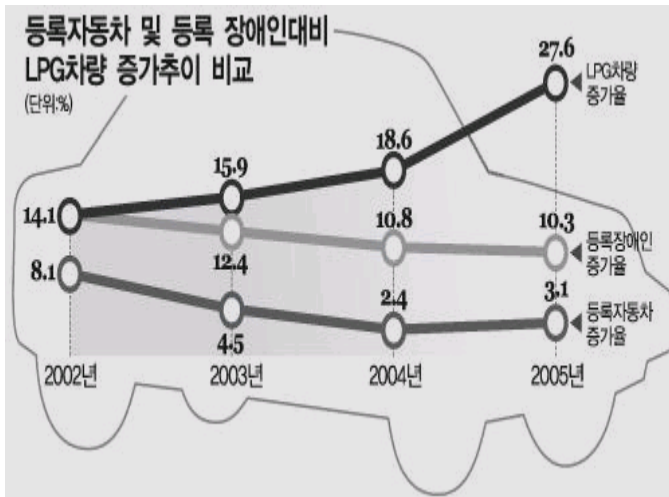
2006년에는 장애인 LPG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이 넘는 52%, 정부전체 장애인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등 재원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균형적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되었다. 말 그대로 장애인 LPG 지원 사업 때문에 장애인 복지 자체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지원 받아야 할 대상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느냐 하는 데 있다. 장애인 LPG 차량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46만명으로 전체 장애인 177만명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정작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이용은 10명중 1명(14%)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동권 보호가 절실한 보행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5명중 1명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결국 장애인 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보다는 차량을 운행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경증, 비보행 장애인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세액 감면 형태가 아니라 정책적 고려에서 당정협의를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예산부족 문제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당초 LPG 차량 세금인상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취지였으나 세금감면 형태로 운영되지 않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용 LPG 지원사업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3년부터는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 부족 문제는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장애인 LPG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사용자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하여, 부정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는 제도 운영 자체의 투명성에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LPG 지원 사업은 언론을 비롯해 국회, 감사원 등에서 문제 사업 리스트 단골 메뉴에 오르내렸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장애인 김 모(33) 씨는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복지신용카드'로 LPG 1,620만원어치를 주유... 사실 김 씨의 복지신용카드는 친척과 친구들이 더 많이 이용.(동아일보 05. 6.7)

고액 지원받은 47명 평균주행거리 年16만km*택시영업 등 부당이 용... 연100억 예산 낭비, 1년 주행거리 27만7604km....(조선일보 04.9.7)

2004년 결산 국회에서는 차량 미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원도 예산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LPG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다 보니 LPG 지원제도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2. 끊임없는 제도 개선 과정 :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

가. 장애계의 강한 반대

LPG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제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장애인 LPG 지원 제도는 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 되었다.

○ LPG 연료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장애계의 반응

- LPG 지원예산이 장애인복지예산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복지 예산을 끌어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LPG 지원예산을 축소부터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저와 같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가용은 사치의 차원을 떠나서 그야말로 발과 같은 도구이며, LPG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많은 장애인들은 자가용 운행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과거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출퇴근을 해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 LPG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4년 10월부터는 LPG지원 상한선을 월 250ℓ로 제한하였으며, 2005년에는 동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2005년 말에는 장애인 LPG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추진되었으며,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통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장애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제도 개선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4년 말에 LPG 지원 상한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조직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동원한 도심시위를 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였으며, 고수부지에서 대규모 시위 등으로 제도 개선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도 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된 공청회에서도 일부 장애계의 예기치 못한 방문으로 공청회장이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LPG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의 목소리 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 내에서도 장애인 LPG 지원 제도는 건드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졌다.

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치열한 내부 토론

그러나, LPG 지원제도라는 성역 때문에 장애인 복지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안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선 고객인 장애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관과 장애인정책팀의 실무자들은 2006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장애인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나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LPG 보조금'이 아니라 '소득보장'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일은 LPG 지원 제도를 어떻게 고치며,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와 장애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우선 보건복지부 LPG지원업무 담당 부서인 장애인정책팀내 난상토론부터 시작하였다. 적어도 팀 내에서 공감대의 형성할 수 없는 대안이라면 당연히 외부 사람들에게도 동의할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다. 연이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와 장애인정책국 차원의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개최되었다. 장·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LPG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무언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혜택을 도로 빼앗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장애인 단체들이 격렬한 반대 투쟁을 할 것이다', '정치인 장관으로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여당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줄지도 모른다', '뭘 하러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등등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었다. 그러나 주위의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 개선이 전체 장애인을 위한 일이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를 공감하였기에 설사 추진하다 접시를 깨더라도 일단 먼저 시작해보자고 하였다. 올바르게 정책을 개선하여 보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장애인정책팀의 진솔한 의지가 참석자 모두를 납득시켰던 것이다. 처음 토론회를 시작한 이후로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면서 LPG 지원 제도는 유지가능성이 낮으며,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LPG 제도 개선을 장애인 복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 2천억~3천억원의 장애인 복지 재정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장애계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한 험난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

가. 예상된 장애계의 반대

제도 개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방침 확정과 함께 청와대 주관 회의를 시작으로 LPG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첫 만남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소속 회원 중 LPG 지원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점 이외에도 제도 변화로 인하여 가장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정책고객이었기 때문이다. 첫 만남 결과 예상했던 대로 장애계는 제도 개선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LPG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축소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시각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를 포함하여 20여개에 달하는 장애인단체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나. 장애인단체와의 신뢰 구축 - supporters 제도

이후 총 6회에 걸친 장애계와의 공식적인 만남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비공식적 만남이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supporters 제도』의 운영은 장애계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완화시켜 주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간 장애인 단체 관리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사무관 1명을 포함해 2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종 행사 지원업무를 비롯해 단체 관리 업무 자체만 해도 벅찬 상황에서 일상적인 관리업무 이외에 타 업무는 엄두도 못내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업무조차도 제때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무책임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장애계의 불신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정책 관련 여론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LPG 제도 개

선을 떠나 장애계의 수많은 현안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와의 최소한의 신뢰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전제 조건이었다.

『장애인 단체 supporters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6년 2월 정식 출범되었다. 장애인정책팀 직원을 개개인별로 3~4개 단체의 supporter로 지정하여 각 단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 뿐 아니라 각 단체의 현안사항이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민원까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었다. 이를 통해 수화통역사 확충, 화상전화기 보급 확대 및 요금인하 추진, 국제행사 유치 지원 등 각 단체가 가진 민원사항이 하나씩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아울러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돈독히 함으로써 장애인단체와 보건복지부 상호간의 신뢰가 한층 더 두터워 졌다.

다. 장애계와의 길고 긴 대화와 설득

드디어 2006년 7월, 정부 예산안이 8월 중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제 주어진 시간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일단 8월 초를 데드라인으로 하여 장애계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거의 모든 장애인 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을 1박 2일의 토론회에 초청하여 정부가 가진 대안을 솔직하게 제시하며 밤새도록 열띤 토론을 거쳤다. LPG 보조금 지원을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07년 150ℓ → 08년 100ℓ → 09년 폐지)하는 대신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수당⁵⁾과 장애아동부양수당⁶⁾의 획기적인 인상과 수급자의 확대, 활동보조인 서비스⁷⁾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3천억원 확보 등에 대해 토론이 계속되었다.

장애계는 LPG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반대,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의 개선방안이 실현만 된다면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이후에도 LPG 제도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토론과 설득이 진행되었다. 7월 3일, 주요 장애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단체 실무자 토론회, 장애인 단체장과 장·차관 면담, LPG 공청회 등 장애계로부터 지겹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반복적인 만남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였다.

5)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차원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6)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7)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외출이나 이동할 때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2006년 7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LPG 공청회에서 LPG 연료지원제도 개선 관련 토론자의 토론 요지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현욱 장애인인권복지팀장은 “보편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된 LPG연료 지원사업은 유지가 돼야하고, 별도의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 없고 예산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해 면세제도로 개편하자”고 강조했다.
-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기존 LPG지원제도를 통해 현재의 수혜자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연료를 쓰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는 비수혜자들에게는 이동수당제도를 신설해 이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주장했다.
-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도 LPG제도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기존 LPG지원제도를 면세제도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현 제도를 건드리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경제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LPG 면세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면세제도로 개편해도 형평성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며 “면세제도로 개편하는 것과 예산 내에서 LPG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밝혔다.
- 기획예산처 강완구 복지전략팀장은 “장애인 LPG지원 예산이 현재 추세로 증가하면 다른 장애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장애인복지 예산은 기형적으로 형성되게 되며,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장애인정책팀장은 “LPG지원제도에 복지부 예산의 절반, 중앙정부 장애인 관련예산의 3분의 1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취약한 계층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인 17세 이하 장애아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LPG제도 개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해 지금보다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장애수당 또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와중에서 8월 3일에 개최된 장애인단체장들과의 보건복지부장관 간담회는 LPG 제도 개선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주요한 장애단체장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부의 예산 일정상 조만간 LPG 개선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석한 장애인 단체장들은 ‘제도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나,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언론과 시민단체를 설득

언론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주요 신문사를 비롯하여 방송사 기자, 논설위원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시민단체나 언론의 반응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최소한 국민 여론은 적어도 제도개선의 취지는 이해하여 줄 것이라는 소박한 자신감이 생겼다.

마. 관련 부처와 국회도 설득

관계부처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도 지속되었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LPG 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부처들을 수시로 방문,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돌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보던 관계부처들의 분위기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LPG 지원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 이상의 재원은 지원하기 어렵다던 기획예산처도 점차 우호적으로 변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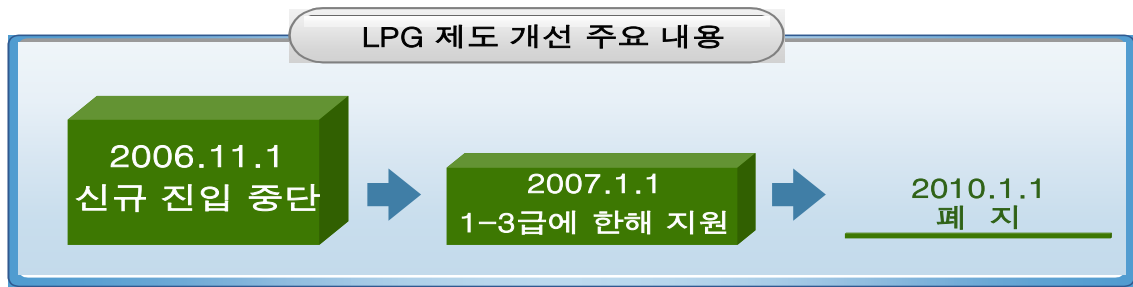
한편 장애계와의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조정부서와 국정홍보처 등과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5-1〉 LPG 제도 개선관련 주요 일정(2006년 7-8월)

구분	일자	참석자	주요 내용
장애인 종합대책보고	6.30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 LPG 개선관련 대통령 보고
주요단체장 면담	7.3	국장, 과장, 지체, 시각, 농아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설명
LPG 관련 청와대 회의	7.4	과장, 차별시정위, 사회정책수석실	-제도 개선관련 동향 및 대안 검토
장애인 종합대책관련 회의 개최	7.7	관계부처	- LPG 제도 개선관련 관계부처 협의
장애인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7.12-13	지체 등 12개단체 실무자 대표	- 제도개선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개략적 설명, 장애계 의견 수렴
주요단체장 장관 면담	7.20	장총련, 지체, 시각, 농아	- 제도개선 필요성 설득 - 제도개선에 대한 장애계 협조 요청
각당 의원 설명회	7.20-21	장향숙, 정화원, 현애자 의원	- 제도 개선 불가피성 설득
LPG 공청회	7.24	장총련 주관	- 제도개선 불가피성 설득 - 장애계는 반대, 이동권 대책 수립 및 면세제도 요구
주요단체장 차관 간담회	7.24	자체 시각 농아 부모회	- 제도개선에 대한지지 요청
언론 대상 사전 설명	7.25	KBS, YTN	- 제도개선 배경 및 추진방향 설명
시민단체 사전설명	7.27	경실련	- 제도개선 불가피성 및 세부 추진방안 설명
라디오 인터뷰	7.27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 제도개선 배경 및 추진 방향 설명
관계부처 협의	7.31	예산처	- LPG 지원제도 개선 및 장애수당 지급액 조정
언론 대상 사전설명	7.31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제도 개선에 긍정적, 지지 예상
장애인 단체 실무자 면담	8.1	지체	- 제도 개선에 따른 단체의 어려움 호소하며 일부 반발 불가피함을 설명
장애인 단체 실무자 토론회	8.3	장총, 장총련, 지체, 시각, 농아	- 제도 개선 구체적 추진안 공개
라디오 인터뷰	8.4	TBS 교통시대	-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 배경 설명
장관 간담회	8.7	장총, 장총련, 지체, 시각, 농아	- 개선방식과 관련 중증장애인 한시 지원 등 요구
TV 토론회 개최	8.7	국회방송	- 제도 개선관련 장애계와 토론회 개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8.8	관계부처 장관	- 제도 개선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보고
콜센터 요원 교육	8.10	콜센터 요원	-제도 개선안 설명, 민원 폭주에 대비
제도개선발표	8.17	전 언론사	- LPG 제도 개선안 공식발표

4. 험난한 여정의 마침표

이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 되었다. 일단 장애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LPG 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중단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현재 LPG 보조금 수혜 장애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급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되, 나머지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2010년까지 4년간 LPG 지원 예산이 약 8천억원 정도 절감되는 방안이며, LPG 보조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제도가 가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표 5-2〉 LPG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 추정액(2007년~2010년)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 제도개선전(A)*	2,745	3,031	3,318	3,604	12,698
▪ 제도개선후(B)	1,575	1,497	1,497	-	4,569
▪ 재정절감액(A-B)	1,170	1,534	1,821	3,604	8,129

* 연평균 54천대 증가 추정(01-05년 평균 증가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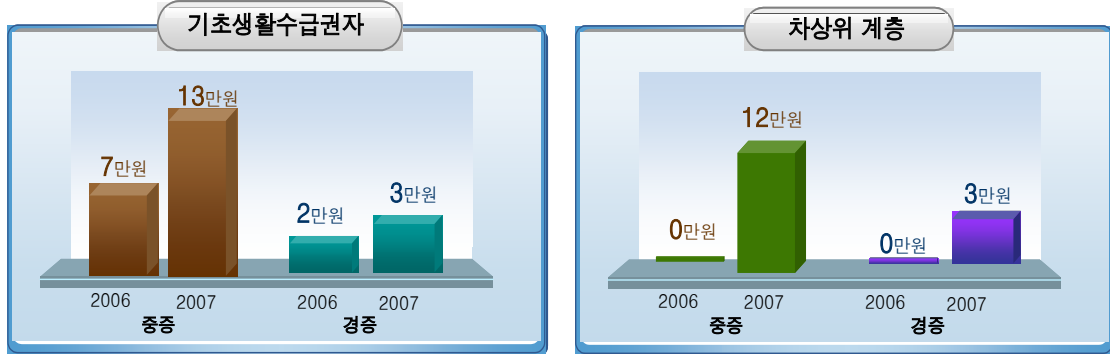
** 2007년 1월1일부터 4-6급 장애인(268천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예산 절감

대신 2006년 소득보장 예산 대비 약 3천 5백억원(지방비 포함)을 추가 확보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수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우선 장애수당의 경우 종래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 중증장애인 월 7만원, 경중 월 2만원 지원에서 지원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기초 중증의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 중증의 경우 월 12만원, 경중의 경우 월 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에 비해 지원액과 지원대상이 거의 2배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림 5-1 > 장애수당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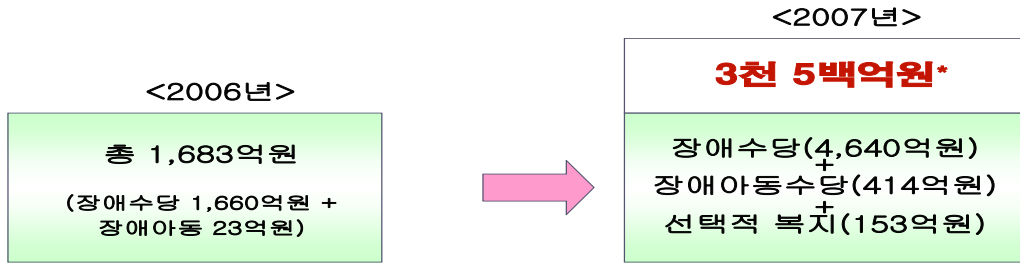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중 1급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던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전체에 대해 지원하되, 지급액도 기초중증의 경우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의 경우 월 15만원, 경증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림 5-2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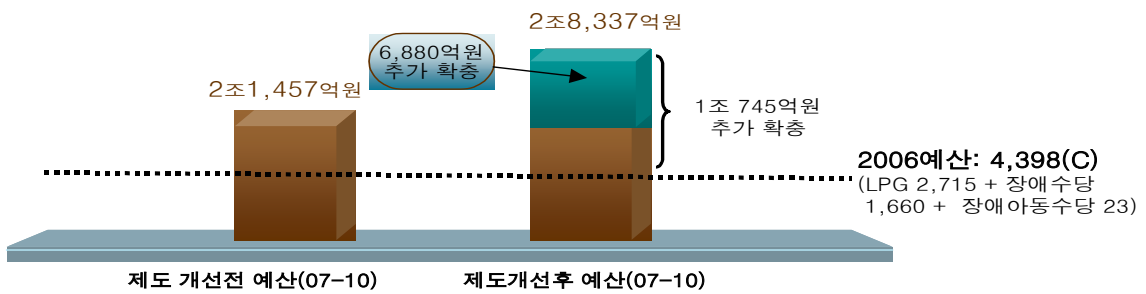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을 위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인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유료 요양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결국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LPG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장애인 복지 재정은 2010년까지 LPG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절감분 이외에도 약 7천억원이 추가 확충됨과 아울러 재정의 안정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표 5-3> 2006년 대비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확충액



* LPG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 절감분 + 장애인복지예산 추가 확충액(지방비 포함)

<표 5-4> LPG 제도개선에 따른 중기 재정 확충 현황



※ 장애인구 증가율 매년 10% 증가, LPG 차량은 매년 54천대 증가 가정

제6장 LPG 지원제도 개선의 성공 요인

LPG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46만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기득권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 발표 이후 집단적인 시위나 거센 반발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전략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46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던 LPG보조금 지원을 폐지하는 제도였던 만큼 기득권을 잃는 계층의 반발이 당연할 수도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보장이 강화되는 등 장애인 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는 비전을 장애계에 먼저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장은 그간의 LPG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정부에 대한 반발이 있겠으나, 보다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여 이러한 신뢰에 보답한 정부의 노력이 제도개선의 성공요인이었다.

단순히 LPG 보조금 대신에 소득보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LPG제도의 당초 목적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저상버스 확충, 편의시설 설치율 확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장애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을 2007년부터 지원한다는 등 종합적인 이동권의 강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당장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소요되며 불합리한 예산사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득이 예산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와 여론 주도층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개선방안의 초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무자들의 난상토론을 거쳐 방안을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협의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여론을 주도하는 신문과 방송사 등의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여론이 정책의 취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정지작업을 탄탄히 한 것이 도움이 되었으며, 예산,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 등 유관부처의 협조를 사전에 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개선안을 발표한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장애계와는 대화가 어렵고 집단적 시위나 반발이 강하여 상대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히 공개하고 꾸준하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신뢰를 쌓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의 노력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장애계에서도 이번 정책개선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진지한 문제인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단체 서포터스 제도를 통하여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친밀감과 신뢰를 쌓음으로써 정책 자체에 대한 장애계의 신뢰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장애인과 기초수급자 등, 가난과 중증장애로 소외된 사람들에게겐, 어찌 보면 차를 소유한다는 것도 사치가 된다는 입장으로 볼 때, 그들에게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좋은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LPG 차량을 적절히 사용했던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면서도 지독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는 인정해주고 싶은 정책이네요.(지체장애 3급, A씨)

마지막으로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될 수 있었던 요인은 정책담당자와 책임자들의 결단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복지 정책을 폐지함에 따른 부담과 주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결단하였으며, 특히 모든 정치적 책임은 장관 본인이 지겠다는 약속은 실무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본부장, 국장의 추진력과 지속적인 후원과 지지가 성공적 정책시행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 LPG 제도 개선이 장애인 복지의 축소가 아닌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정책담당 실무자들의 신념은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을 굳건히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2006년 8월 17일 LPG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신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였다.

〈 복지부 장관 발표문 〉

정부는 소득이 적고 장애가 심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과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2007년부터 대폭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 이동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5년 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절반에 불과한데다, 장애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약 5천억원의 재원을 들여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손수 돌보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유료요양시설 입소비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책의 강화와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장애인 복지 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현재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간 국회나 관계부처, 장애계 일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바와 같이, 차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소득이 없거나, 차를 구입할 여유는 있어도 본인이나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로서도 장애인 예산의 절반 이상이 LPG 지원에 편중되어, 새로운 장애인정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1월 1일 이후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3년간 LPG를 지원하되, 2010년 1월에는 동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대신 내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절반을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등 모든 장애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PG 지원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원 중단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과 불편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복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장애인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7장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장애계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세상에서 한번 주었던 것을 다시 빼는 것이 제일 나쁜 일’이라는 말이었다. 이제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커다란 빛을 지게 된 셈이다. 정부의 취지를 믿고 묵묵히 받아들여준 장애인들에 대하여 정부에 남겨진 과제는 이 빛을 어떻게 제대로 청산하느냐 하는 데 있다.

장애인의 열악한 생활상이 말해 주듯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는 나날이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아직 정부 정책은 이러한 욕구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장애인 복지는 해묵은 과제를 털어내고 새로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앞으로 힘차게 내달려야 할 때이다. 다만 그 과정은 정부 ‘혼자’가 아닌 장애계,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길이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 노력할 때 장애인 복지는 더 한층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제8장 우리 사회의 장벽, 장애인차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도 유전과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생각은 장애인은 우리사회에서 특별한 사람 또는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 가운데 선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체 장애인 214만 9천명의 4.0%로 약 8만 6천명이고, 출생시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은 0.7%로 약 1만 5천명에 불과하다. 출생시 원인을 선천적 원인에 포함하더라도 그 비중은 5%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89.0%인 191만 3천명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인이 89.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5년 조사와도 큰 변화가 없었다. 결국 장애인의 거의 대부분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표 8-1〉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발생원인	전체	선천적 또는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 불명
		소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소계	질환	사고	
비중 (%)	100.0	4.7	4.0	0.7	89.0	52.4	36.6	6.3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한편, 장애발생 연령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애발생 연령을 19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1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30.9%이며 2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69.1%이다⁸⁾.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은 성인이 된 이후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8) 장애발생 연령 통계치는 0세부터 64세까지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낸 통계치이다.

90%에 이르는 후천적인 장애발생 비율과 70%에 이르는 성인장애발생 비율은 장애인이 유전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장애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장애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자신과는 별개의 사람들로 치부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42%에 달하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이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이 있는 장애인이 53%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의 관행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여성장애인의 상당수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도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다. 먼저, 무엇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준거가 없다. 명백한 차별행위는 특별한 준거가 없더라도 사회의 일반적 관행에 의해 확인될 수 있겠지만,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는 차별행위라는 인식조차 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차별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행위를 겪은 장애인에 대한 구제와 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약하여, 차별당한 장애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일반적인 법체계에 따라 민사 및 형사소송을 통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받는 경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이에 대응하는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의 정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지의 여부는 그 사회의 경제규모 등 경제력의 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과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과 정책적 배려, 그리고 인권보장의 수준도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이고도 충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름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꾀하는 사회

적 진전이며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제도적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사회가 보다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정과정을 살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논의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이 있게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9장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벽을 허물자! 9)

2001년 열린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법 제정 추진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이후 약 6년여가 소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입법이었다는 데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정부 혹은 국회에서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장애계에서 소외받고 차별 받은 경험을 법으로 녹여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켜 주리라 생각한다.

1. 장애계에서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시작은 부산에 기반을 둔 열린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 열린네트워크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1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의 국토순례를 실시함으로써 법 제정의 서막이 올랐다¹⁰⁾.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도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모델로 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후 논의를 통해 두 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정리되었다.

2002년 11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연대를 제안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 준비모임이 결성되었다.

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쟁점 그리고 합의’(이승기, 2007)를 참조하였다.

10) www.opennet.or.kr 참조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과정>¹¹⁾

- 2001.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골격 마련 (열린네트워크)
- 2001. 7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국토순례 (열린네트워크, 부산, 서울)
- 2002. 4 국회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6 장애차별금지법제정위원회 구성 및 법안 마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 (열린네트워크, 서울, 부산)
- 2002.10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002.1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한국장총)
- 2002.1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 2002.1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 (열린네트워크)

그 결과 마침내 2003년 4월 15일 우리나라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 최초로, 장애인단체들을 거의 모두 망라한 58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출범하였다. 장추련의 출범은 장애인운동사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민운동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범연대운동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장추련 결성을 계기로 장애계는 국토대행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초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장추련은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의 공개토론회를 열었고¹²⁾, 이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겪은 차별사례가 수집되었다. 그 후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사례검토가 실시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작업을 토대로 2004년 5월에는 대규모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와 법조인의 자문토론회를 거쳐서 2004년 11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장추련은 이와 같이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각 정당과 접촉

11) www.opennet.or.kr 자료 재인용
12) 이하 내용은 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김광이, 2007)을 참조하여 기술되었다.

을 시작하였다. 당시 장애계의 접촉에 대해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당시 장추련은 마련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주요 3당과 접촉을 했어요. 민주노동당만을 애초에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서 그 쪽이 창구가 된 거죠.” (김광이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부위원장)

장애계와 민주노동당은 3차례의 간담회 및 토론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인 노회찬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이후 장추련의 주도하에, 기자회견, 결의대회 개최 및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2005년 9월 20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2005년 10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장추련에서 당초 요구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인권법으로 여긴 장추련은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였다.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대한 장애계의 거센 반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전 인수위 시절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동시에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힌 바도 있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초창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보다는 일반법으로서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차별을 다루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보다 바람직하고 시급한 것으로 인식

13)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장애계의 입장이 잘 나타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노회찬 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였다. 이것은 장애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복지차원이 아닌 인권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계의 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14)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이와 같은 정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4년 10월 21일 대통령 주재 청와대 고위급 회의에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원칙을 결정하고 차별판단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차별판단의 일관성과 복합차별 해소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04년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폐지하고 동법에 따른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및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1월부터 추진해오던 차별금지법 제정노력에 더욱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된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사항 중의 하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설치였는데, 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에 따르면 이러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장애계는 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였다¹⁵⁾.

또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부 입법도 중단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의 반대 등으로 입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장추련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법안 성안과정에 장애계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법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이 결정되고 장애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서자 보건복지부는 2005년 11월 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5) 장추련의 김광이 부위원장은 “장애로 인한 차별은 다른 분야에서의 차별보다 차별영역과 차별유형이 광범위하고, 차별기간이 영구적이며,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복잡해 인권위의 차별시정기구에 일원화돼 권고 수준에서의 조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금지할 수 없다”며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의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3. 갈등의 고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을 인정하라

2004년 10월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노력이 가속화되면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던 장애계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에 대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 작성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국회는 계류 중인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후 함께 병합심리 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밝히면서 장애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입법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마침내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에 위기를 느낀 장애계는 2006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립적 입법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차·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끌어낼 필요가 있었죠.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은 결국 차별시정과 관련한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모두 합치겠다는 것인데, 이 기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별도로 만들어 저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게 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거농성을 한거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점거농성은 50여일 이상 지속되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5월 2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이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5월 26일 점거농성을 해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 제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에 있어 흐름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는 하나 국회의 심의가 사실상 보류되고 있어 별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 방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를 포함한 차별 판단 기능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항을 차별금지법

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어려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표는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데 있어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 결정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제정을 용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장애계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었고 지지부진 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논의가 활성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후부터 정부 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4. 또 하나의 분수령, 민·관공동기획단의 활동

장애계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을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법안의 내용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심의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성안될 경우, 이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나아가 특별법 성격으로서의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일반법 성격인 차별금지법으로 장애를 포함한 차별사항을 다루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 인정 입장에서의 변화는 향후 법안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별도의 법으로 입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반영되어 2006년 6월 28일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 제80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구기획단의 설치·운영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후속조치로써 2006년 7월 11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주재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관계부처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연구기획단의 운영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이하 차별시정위)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차별시정위는 2006년 7월 21일 장추련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구기획단 참여를 공식 제의하였고, 장추련은 상임집행위의 의결을 거쳐 2006년 7월 25일 연구기획단 참여를 공식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위는 정부 관련부처와 장추련에 연락을 취하면서 연구기획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8월 11일 연구기획단 운영을 위한 정부 부처간 사전회의를 거쳐 동년 8월 16일 장애 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애계와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기구를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민·관공동기획단)으로 정하였고, 이 민·관공동기획단은 2006년 12월 12일까지 전체 회의 7차례와 소위원회(총론소위원회 및 각론소위원회 포함) 5차례 등 모두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서로 의견을 조율하였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2006년 8월 16일로 예정된 장애계와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회의를 앞두고 2006년 8월 11일 정부 부처간 사전회의¹⁶⁾가 열렸다. 당시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입법에 대해 관계부처들의 입장정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므로 각 부처의 입장확인 없이 장애계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뿐더러 장애계의 불신을 사는 일이었으므로 부처간 사전회의는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쟁점인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한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매우 중요했다. 법무부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중 하나는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법 성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먼저 입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인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할 경우 다른 사회적 약자 층의 개별적 차별금지법 입법화 움직임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사실상 난처한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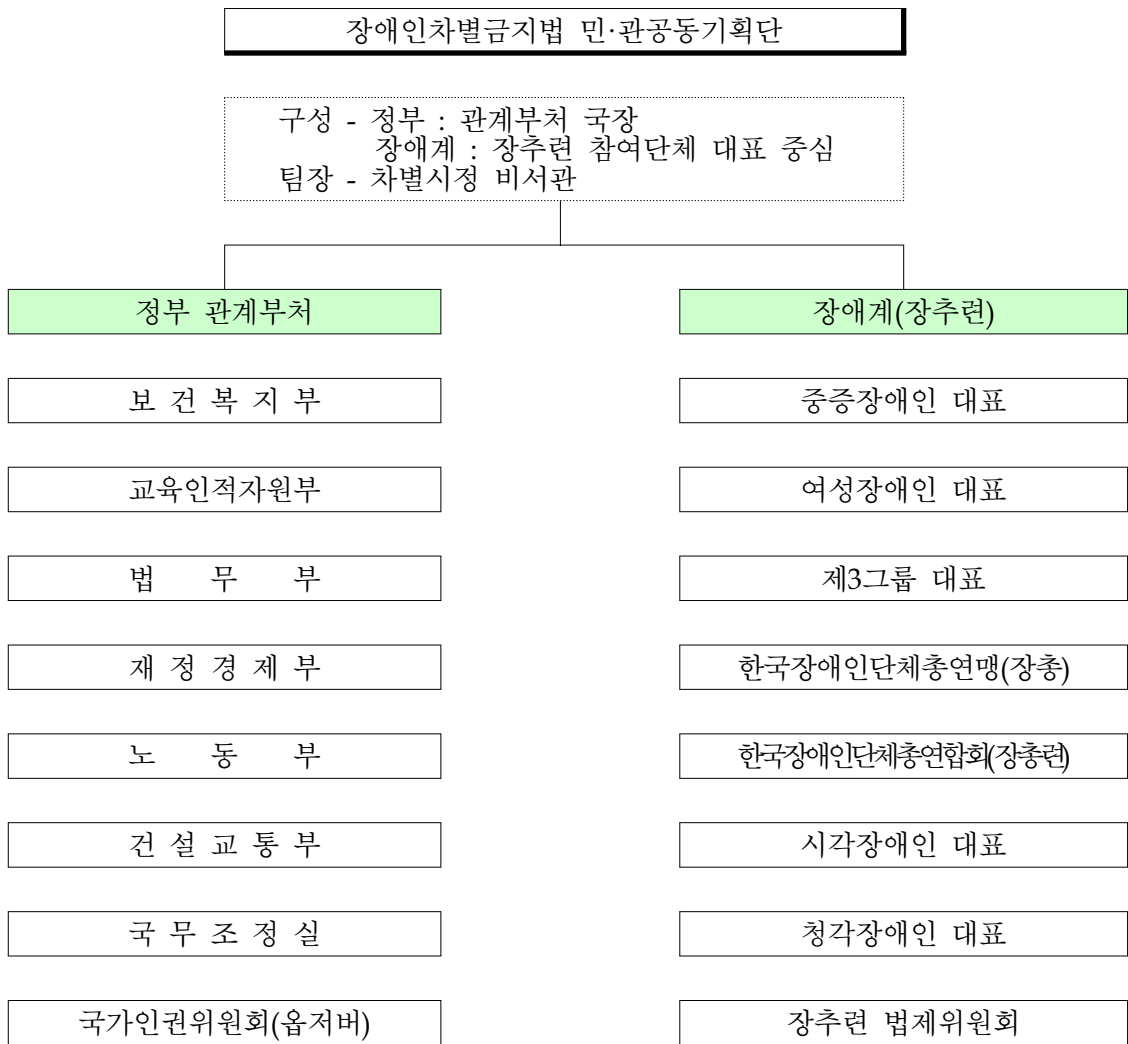
16) 차별시정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인권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애 처해 있었다. 먼저, 장추련의 법안이 현행법의 체계를 바꾸는 급진적인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전체의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복지를 총괄하는 부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면에서 나서서 반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현실적인 법안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교육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입법에 대해 온건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개정 중인 장애인특수교육진흥법을 비롯한 여타 법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특별법보다는 일반법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정부부처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점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중 별도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을 용인하는 입장을 피력한 이후에는 큰 쟁점이 될 여지는 없었고, 향후 정부와 장애계의 회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어느 수준에서 담을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장애계와 정부의 뚜렷한 입장 차이는 장애계와 정부 간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낳게 하였다.

<표 9-1>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¹⁷⁾



나. 장애계와 정부의 서로를 향한 이해의 과정 : 민·관공동기획단 제1~4차 전체회의¹⁸⁾

제1차에서 제4차 민·관공동기획단 전체회의는 장애계와 정부가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입법에 대해 동의하는 단계로 민·관공동기획단 회의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각 부처의 실무검토는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17) 제3차 회의부터 정부통신부 및 여성가족부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18) 제1차 전체회의는 2006년 8월 16일, 제2차 전체회의는 2006년 8월 30일, 제3차 전체회의는 2006년 9월 13일, 제4차 전체회의는 2006년 9.27일에 열려 매 2주마다 한 번씩 회의가 개최되었다.

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1차 회의에서는 민·관공동 기획단의 운영방식과 회의진행방식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민·관공동기획단의 명칭이 정해진 것도 제1차 전체회의에서이다.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제정을 전제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정부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향후 민·관공동기획단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제2차 전체회의와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기존법령과 중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도입되지 않거나 입증 책임의 전환과 같이 현행법 체계에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애계는 법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이 장애계와 정부가 상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대해서 정부쪽에서 동의한 것이다. 물론, 법무부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동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의 경우 실질적인 차별조항에 대한 규제는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규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별도로 입법화되는 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정리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검토에 탄력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할 명분이 약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선언적인 규정으로 제정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도 작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에 대한 동의로 민·관공동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에 대해 이전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다. 법안에 대한 합의

제4차 민·관공동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정리로 민·관공동기획단의 회의는 각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병행해 법안 작성을 위한 총론과 각론 소위원회로 나뉘게 된다. 총론 소위원회(이하 '총론소위')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여, 법안명칭,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차별개념, 시정기구 문제, 시정권한 문제, 벌칙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체 체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들을 다루었다. 각론 소위원회(이하 '각론소위')에는 민·관공동기획단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별적인 차별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총론과 각론 소위를 통하여 각 부처와 장애계는 핵심쟁점 사항 및 각 차별영역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실시하여 장애의 개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정기구, 입증책임의 전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보았으며 개별적인 차별영역에 대해서도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론과 각론 소위의 분위기가 무척 경직되고 침예한 갈등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으나, 정부 측은 장애계측의 어려움을 장애계측은 정부 측의 입장을 상호 이해하면서 커다란 원칙에 대해 합의를 해나갔다.

이후 전 부처가 참여하는 5~6차 민·관공동기획단 전체회의에서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전체회의가 2006년 12월 12일 한 번 더 개최되었으나 이 회의는 제6차 전체회의 후 만들어진 차별시정위 조정안에 대한 보고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회의의 종료는 제6차 회의라 할 수 있다.

라. 정치권의 발 빠른 움직임, 열린우리당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발의

민·관공동기획단의 회의가 막바지에 달할 무렵 정치권의 움직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었다.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2006년 내에 입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총력전에 돌입했는데¹⁹⁾ 이러한 장애계의 노력은 장애인

19) 2006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에게 법안제정을 권고했는데 이 당시 경제계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장애계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서 경제계의 반발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경총 규탄대회 및 집거,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1인 시위 및 상공회의소 점거농성을 전개한 데에서도 장애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염원을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민·관공동기획단의 논의와 별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급진적인 면을 상당부분 조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장향숙 의원안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장애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위해 추진한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주요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장향숙 의원이 독자적인 법률안을 준비하던 시기에 차별시정위원회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조속히 민·관공동기획단의 합의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이는 민·관공동기획단의 합의안을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경쟁적인 움직임은 열린우리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중요한 정치적 배경이 되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차별시정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되 장애계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열린우리당은 장애계를 납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써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계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의 확보였는데, 입증책임의 완전한 전환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²⁰⁾.

차별시정위의 조정안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2006년 12월 6일 실무당정회의가 열렸다²¹⁾. 실무당정회의는 앞으로 열릴 확대당정협의를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법무부 및 차별시정위가 당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최대한 조정하여 단일안을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그 후 2006년 12월 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확대 당정협의를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정명령 도입 등 권리구제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하고, 기타 장애의 개념, 정당한 편의제공

20) 정화원 의원이 준비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도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는데 정화원 의원안도 열린우리당이 시정명령 제도를 결심하게 된 한 요소가 된다.

21) 차별시정위는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차별시정위는 열린우리당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안과 제2안을 제출하는데 차별시정위가 애착을 둔 제1안에는 시정명령제도가 빠진 안이었고, 제2안은 시정명령제도가 포함된 안이었다.

의 범위, 차별시정기구, 입증책임의 배분을 부수적인 쟁점으로 하여 논의를 하였다. 확대당정협의의 논의 결과 제한적인 시정명령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에 두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추가 검토하여 보고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시정명령제도의 도입은 결정 되었지만,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다. 2006년 12월 11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제로 차별시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시정명령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시정명령제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동 제도가 차별시정기구의 설치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과의 상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기능만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시정명령권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나 법무부 산하에 차별시정기구를 두는 방안은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원칙에 배치되어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방침을 다시 반복할 때만이 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검토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정권고권과 시정명령권을 이원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시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권한은 법무부에 두는 방안의 절충안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 절충안은 시정명령제도를 이원화하여 향후 차별행위의 효율적인 시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 방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차별시정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시정명령권을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수정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고 법안의 자구수정 등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되고 2006년 12월 14일 열린우리당에 송부되어 졌다. 이 최종안은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외 53인의 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추진경과 >

- o '06. 8. 16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1차 회의
- o '06. 9. 27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4차 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별도 입법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가 합의
- o '06. 10. 18 및 '06. 11. 2 두 차례에 걸쳐 총론소위 및 각론소위 개최
- o '06. 11. 8 제5차 회의 때부터 차별시정위와 장애계가 각기 조정안을 작성하여 논의
 - '06. 11. 8 5차 회의 및 '06. 11. 15 6차 회의의 두 차례에 걸쳐 회의 개최
 - '06. 11. 15 6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재차 구성기로 합의하고 동 소위원회에는 차별시정위의외에 법무부, 복지부, 인권위 및 장애계 법제위원 3인이 참석기로 결정
 - '06. 11.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위원회 개최, 법안에 대한 의견조율
 - '06. 12.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실무당정회의
 - '06. 12. 8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당정협의
 - '06. 12. 12 장애인차별금지법 기획단 제7차 회의 개최로 기획단 종료
- o '06. 12. 14 정부 최종안 성안, 열린우리당에 송부
- o '06. 12. 18 열린우리당 정부최종안을 받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마.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발의

한나라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시종일관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장추련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요청에 한나라당이 한차례도 응하지 않은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소속 정화원 의원이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화원 의원이 주축이 된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민·관공동기획단의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안 그리고 장애인의 차별경험을 기초로 하여 성안된 장추련안과는 달리, 장추련안과 민·관공동기획단안을 참고하여 법안이 만들어 지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제출한 것과 같은 날인 2006년 12월 18일에 한나라당 의원 38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주요 3당이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었다.

바. 마침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다

장애계는 당초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2006년 내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2006년 12월 18일에서야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장애계는 차선책으로 2007년 2월 임시국회 입법을 목표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국회를 향한 지속적인 설득과 집회 등을 통해 장애계는 2007년 2월 입법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장애계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추련이 마련한 민주노동당안, 민·관공동기획단에서 합의한 열린우리당안 그리고 정화원 의원이 작성한 한나라당안을 2007년 2월초에 병합심의하기 시작했다.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거쳐 2007년 2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장애계와 정부가 합의한 안이었으므로 별도의 이견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신속히 법안심사를 마치기 위함이었다.

열린우리당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한 차별시정기구를 별도로 독립할 것과 장애의 개념에 장기적인 기간개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화원 의원은 차별시정기구가 독립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도 장기간의 기간개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나치게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화원 의원의 이견제시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다루기로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청회를 갈음하는 정책간담회를 겸하기로 하고 정책간담회에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차별시정기구의 설치문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 2007년 3월 6일이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회 본회의 의결 일정을 감안하여 차기 법안심사소위원

회를 2007년 2월 21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2007년 2월 21일에 개최될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월 21일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을 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 당시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법안자체가 심의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었으므로, 2월 국회 처리에 필사적인 입장을 취했다. 2월 21일 열린 법안소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장추련 법제위원장은 차별시정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마지막 주요 논쟁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다. 장애의 개념에 장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장애계의 의견 제시로 장애의 개념에 대한 실무진들의 협의가 있었으나 동 협의에서 장기간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장애의 개념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최종안이 마련되었고, 2007년 2월 22일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수정을 거쳐 2007년 3월 2일 국회법사위를 통과, 마침내 2007년 3월 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7명 중 197명이 찬성함으로써 역사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사. 대통령 서명식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정부로 넘어와 2007년 4월 4일 대통령 서명식²²⁾을 거쳐 2007년 4월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정식으로 법제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은 법 제정경과보고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장애계 주요 인사가 단상으로 나와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법률에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서명식은 2007년 4월 4일 오후 3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보고가 끝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을 위해 관련 인사들이 단상으로 나오는 사이 장애인 두 명이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이 앉아 있는 단상 앞으로 나와 기습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위에 참여한 두 장애인은 “지금 장애인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날 서명식 후 거행될 수요자관점 업무보고와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보고를 위해 영빈관 내부 벽면에 걸려 있던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이 나라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야만의 대한민국”이라고 외쳤다. 이에 대통령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였지만 두 장애인은 계속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면 시간을 주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였으나 두 장애인이 계속 구호를 외쳤고 이에 경호원들이 두 장애인을 행사장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장애인은 귀가 조치되었으며 당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화되었다(부록 1 참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므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우리사회에서 법률로써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장애계와 정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인 열린우리당(안)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비교

장애개념을 열린우리당에서는 기간규정이 없이 손상 및 기능상실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석에 위임하고자 하였으나, 한나라당(안)에서는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장애기간을 규정하는 안을, 장애계에서는 장·단기, 일시적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방대한 장애개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나라당(안)을 받아들여 장애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환자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나치게 범위가 확장될 여지를 없앴다.

금지대상의 차별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나라당에서는 차별개념을 용어정의에 포함하여 직·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를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로 정의하였고 장애계에서는 이에 더하여 표현물에 의한 차별을 추가하였다. 장애계(안)처럼 모든 표현물에 의한 차별을 다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부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결국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하는 데 장애계와 정부부처의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되었다.

다른 모든 조항도 그러하지만 특히 금지대상 차별 영역은 현실과 목표 간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하게 나타나는 사안이었다. 즉 영역을 지나치게 넓히거나 한꺼번에 시행토록 할 경우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어 제도가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좁히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를 훼손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장애계에서는 각각 12개, 14개 영역을 제시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광범위하게 나열한 관련된 영역들을 연결하여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하였다. 정부부처나 장애계 모두 가장 힘들고 지루했던 작업을 거쳐 결국 6개 영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중의 하나가 차별시정기구의 설치였다. 장추련과 한나라당(안)에서는 차별시정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만을 행사할 수 있어 차별피해의 실질적 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장애인차별문제를 다루기에 전문성과 감수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독립적인 시정기구와 이 시정기구에 시정명령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정부부처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부처협의를 거쳐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을 결정한 바 있기(2004년 10월 21일) 때문에 이 방침을 결정할 때와 유사한 수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차별 시정기구 독립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였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었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안을 공통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제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를 실효성 있게 행하기 위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벌칙을 참고하여 법안심의 과정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요한 내용 합의 등 제정과정에 있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참여적 정책결정의 모범적 선례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즉 민관공동기획단에서 정부부처와 장애계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견과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정부와 장애계 간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재정법의 주요내용 비교

각 당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쟁점 중심으로 하여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9-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관련 주요쟁점별 비교

	장애계(민주노동당) 안	열린우리당 안	한나라당 안	제정법
장애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규정 : 장기·단기·일시 모두 포함 ○ 질병 포함 ○ 사회적 태도, 물리적·문화적 장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규정 : 없음 - 손상 및 기능상실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석론에 위임 ○ 질병 미포함 ○ 사회적 태도, 물리적·문화적 장벽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규정 :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 질병 포함 ○ 사회적 태도, 물리적·문화적 장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규정 : 장기간 ○ 질병 미포함 ○ 사회적 태도, 물리적·문화적 장벽 삭제
차별행위 범위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장애계(민주노동당) 안	열린우리당 안	한나라당 안	제정법
	<p>제공 거부, 표현물에 의한 차별(4가지)</p> <p>○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의 정의 조항에 포함</p>	<p>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4가지)</p> <p>○ 장애인 관련자와 보조조건, 재활보조기구에 관련된 차별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p>	<p>제공 거부(3가지)</p> <p>○ 장애인 관련자는 장애인의 정의 조항에 포함하고 보조조건 및 재활보조기구 관련 차별은 차별금지 선언 규정에 포함</p>	<p>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4가지)</p> <p>○ 장애인 관련자와 보조조건, 재활보조기구에 관련된 차별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p>
차별영역	<p>○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 이동 및 교통수단,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시설, 건강권, 폭력(14개 영역)</p>	<p>○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6개 영역)</p>	<p>○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 이동 및 교통수단,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의료, 폭력(12개 영역)</p>	<p>○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괴롭힘 등(6개 영역)</p>
차별시정기구	<p>○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p>	<p>○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설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p>	<p>○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p>	<p>○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로 설치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p>
벌칙	<p>○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p> <p>○ 차별행위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차별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준용</p>	<p>○ 정당한 편의 제공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시간 이하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p> <p>○ 차별행위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차별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p> <p>○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준용</p>
시행시기	공포 후 1년	2010년	공포 후 1년	공포 후 1년 (시행'08.4.11)

제10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참여정부의 역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역사를 살펴본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태동에서부터 법 제정까지의 주역은 장애계 그 중에서도 장추련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입법이었으며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들의 아픔이 반영된 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있어 장애인들의 노력과 땀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법제정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가 지나도록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장애계의 노력만으로는 입법화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별도 입법 용인과 장애계와 정부가 함께 모여 협의한 민·관합동기획단의 설치라 할 수 있다.

초창기 민·관합동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장애계와 정부 양쪽 공히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계는 정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없음에도 장애계를 달래려는 수단으로서 민·관합동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냈으며, 정부에서는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장애계에서 그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회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민·관합동기획단의 운영과정에서 보여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계의 적극적 의지와 정부 측의 이해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또한, 민·관합동기획단에서 조정안을 만들 무렵부터 보여준 열린우리당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의 의지와 추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법제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결정적인 기폭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노력과 추진이 없었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결국 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2007년 4월 10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민·관합동기획단의 조정안을 2007년 3월경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참여정부에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참여정부가 장애인차별 금지라는 장애계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장애인 인권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1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진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법령이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차별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데에 있어 한계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기존의 법률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이 장애인으로부터 태동되고 시작되어 결실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장애인 운동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성숙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법이 입법화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민중운동이 결실을 보았다는 사실은 앞으로 장애인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계 당사자들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장애인에 맞추어 변해야 한다는 이 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 장애계,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관심이 절실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은 사안들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사실이다.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규정에 대해 대통령령에 그 범위 및 단계적 시행방안을 위임해 놓았다. 그러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범위를 설정하고 시행시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정하는 법률과 달리 대통령령과 부령은 현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장애계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 될 전망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이 연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위법령에 대한 제정이 지연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되

었으나 많은 부분에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장애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존 법령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맞추어 제·개정하는 일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법령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 문제되어 왔던 보험가입과 관련한 규정들, 운전면허취득과 관련한 규정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편의제공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건축법, 교육관련법 등에 대한 점검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는 법의 내용이 홍보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차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행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사태는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제 4 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

제12장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성과와 한계

1. 결실을 맺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아직 장애인을 보호·복지·시혜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도 그려내는 장애인상도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정이나 시혜가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 보호·복지·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립을 이루고 납세를 하는 “시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목적이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할당고용제(의무고용제)²³⁾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그 근로자수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의무고용 대상기업의 범위가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²⁴⁾ 이후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장애인근로자 수와 고용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성과는 장애인 고용분야의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12-1 참조>

이러한 성과는 의무고용제 도입 이후 17년간 직업상담·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에 대한 취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1만 여 명 이상의 장애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사업주 지원제도를 통

23) 할당고용제(割當雇傭制)는 의무고용제(義務雇傭制)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 또는 강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정하는 제도이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정해진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전적 제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로 법제화되어 있다.

24) 의무고용 적용을 받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00여 업체 정도였으나, 2004년 1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2006년 기준으로 19,000여개 기업이 의무고용 적용을 받고 있다.

해 기업의 생산성 손실을 보상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전개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2-1〉 연도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05.12.31 현재)

연도	사업체수	장애인근로자(명)	고용률(%)
1990	2,017개소	7,758	
1995	2,229개소	9,582	0.43
2000	1,891개소	14,434	0.73
2001	2,090개소	17,640	0.87
2002	2,159개소	20,709	0.99
2003	2,141개소	22,718	1.08
2004	16,950개소	46,674	1.31
2005	17,414개소	55,009	1.49
2006	19,068개소	67,261	1.6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한편,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들을 실천해 왔다. 정부부문의 고용률이 2%에 달할 때까지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7급·9급 공무원 공채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 왔고 장애인 공무원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을 지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수험준비반을 운영하였으며, 2005년에는 장애인의 공직진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장애인 공무원 적용제외 직종”을 대폭 축소²⁵⁾하였으며, 그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은 2%를 달성하였다.<표12.-2>

25)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적용제외 직종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전체 공무원수의 2/3 가량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용받지 않는 적용제외 직종이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이제는 적용제외 직종은 물리력이 필요한 소방, 군인, 검찰 등 1/10 정도로 축소되었다.

〈표 1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증가

구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990년도	1,504	0.52
1992년도	1,987	0.71
1994년도	2,309	0.83
1996년도	2,926	0.99
1998년도	3,413	1.23
2000년도	4,065	1.48
2001년도	4,420	1.61
2002년도	4,676	1.66
2003년도	5,421	1.87
2004년도	6,079	2.04
2005년도	6,853	2.25

자료 : 노동부. 2006

<표12-3>은 참여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확대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 준다.

〈표 12-3〉 정부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변화 추이

구분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기간	'93년~'97년(5년)	'98년~'02년(5년)	'03년~'06년(4년)
총증가	1,316명	1,373명	7,543명
연평균증가	263명	273명	1,886명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한편, 정부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07년 11월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하도록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였다.

2.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한계의 노출

그러나, 이러한 수치적인 성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의 직업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지표로 파악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당시 등록장애인이 25여만 명에 불과하던

때에 중증·경증을 불문하고 장애인 전체를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설계되었다. 당시에는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고, 장애인 직업문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회가 배려해야 할 분야로 간주되었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역시 당시의 수요자(장애인) 규모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300인 이상 기업의 일자리 중 2% 정도를 장애인에게 할당하면 장애인 직업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추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이 200만명을 넘어선 현재에는 이러한 설계를 수정·보완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 현재의 의무고용제로는 장애인의 직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직업능력 약자인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의무고용제에 의한 장애인의 일자리는 민간기업 9만 1천명, 공무원 1만 6천 여명에 불과하며, 50인 미만 기업 중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1만 3천명에다 직업재활시설의 9천 여명을 합산하여도 9만 2천여개에 지나지 않는다.²⁶⁾ 이는 20세~64세 경제활동 장애인수 77만 3천명(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의 11.9%에 불과한 것이다.

즉, 의무고용제를 포함한 국가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 전체를 통한 일자리 수는 일할 수 있거나 일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의 실업률은 사회 전체의 실업률에 비해 현저히 높고 그 소득수준 역시 절반 수준에도 불과한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의무고용률 2%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추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나. 경증장애인 위주의 취업, 중증은 소외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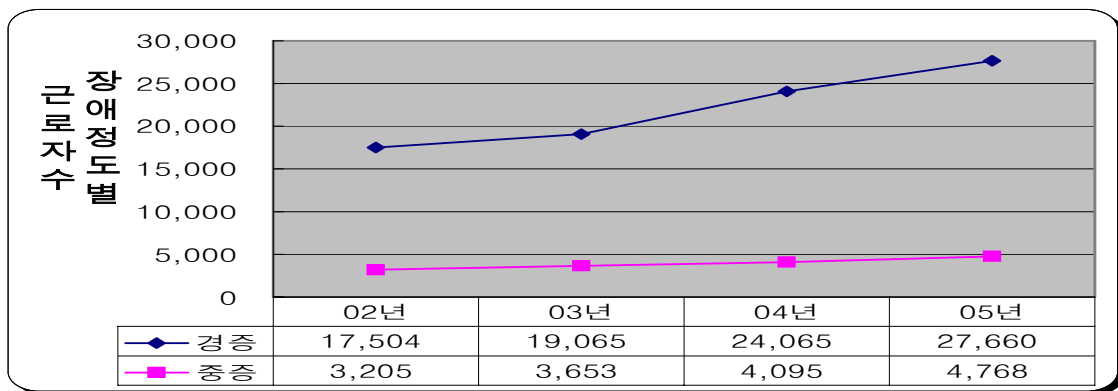
의무고용제는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쉽지 않은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의무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의

26)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2% 의무고용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이외에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으로서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기업의 일자리도 의무고용제에 의한 일자리에 포함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 의무고용제에 의한 일자리는 아니나 정부지원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취업을 중점 지원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므로 경증장애인이 의무고용제에 힘입어 좋은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고 중증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⁷⁾ <그림12-1>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취업한 장애인근로자 중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이 여전히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1> 2002년~2005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증·중증장애인 근로자수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년

기업은 영리추구를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생산성 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의무고용제에 순응하여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속성을 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무고용제를 재설계하여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정책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의무고용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의무고용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7)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중 2급 이상인 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지체·발달정신·심장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3급인 장애인을 의미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와 동 시행규칙 제2조). 이 기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체·청각·언어·시각·정신지체 등 5개 장애유형에서 출발하여 2003년에는 15개 장애유형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였지만, 신체적·정신적 기능손상에 초점을 둔 정태적 장애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무고용제에서 이러한 장애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정책대상으로 삼은 결과, 의학적 기준에 의한 기능손상 정도만이 반영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Work Ability) 또는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근로능력 내지 직업적 능력이 부족하여 진정으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정책의 효과가 우선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사실상 보호시설에 가까운 직업재활시설에 1만 여개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인 장애개념과 관련하여 OECD 선진국 대부분은 개인의 기능손상이라는 정태적 상황을 넘어서서 기능회복과 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준비정도까지 고려하는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러한 개념을 권고하고 있다. 의무고용제도의 본산지인 독일이 의무고용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커다 할 것이다.

다. 고용촉진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 및 비효율

1990년 의무고용제 시행 이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지만,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²⁸⁾으로 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재활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²⁹⁾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지만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기금의 집행은 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공

28) 근로자 100인 이상 의무고용기업 중 2%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정부의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에 전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2/9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와 동 시행령 제47조)

단)에서 담당하게 되어 감독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사업구조는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간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야기하고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비용 투입 대비 사업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편, <표 12-4>에서 보듯이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관련하여 노동부(72개소)·보건복지부(419개소)·교육인적자원부(38개소) 등 3개 정부부처에 걸쳐 529개 기관이 각자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직업능력평가·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정보제공 등의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모습이다. 또한, 장애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관기관과 기업에 관한 정보를 가진 노동부 소관기관, 그리고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서비스 연계가 부족하여, 적기에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기에 어려운 구조적·제도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표 12-4> 장애인 고용관련 각종 사업수행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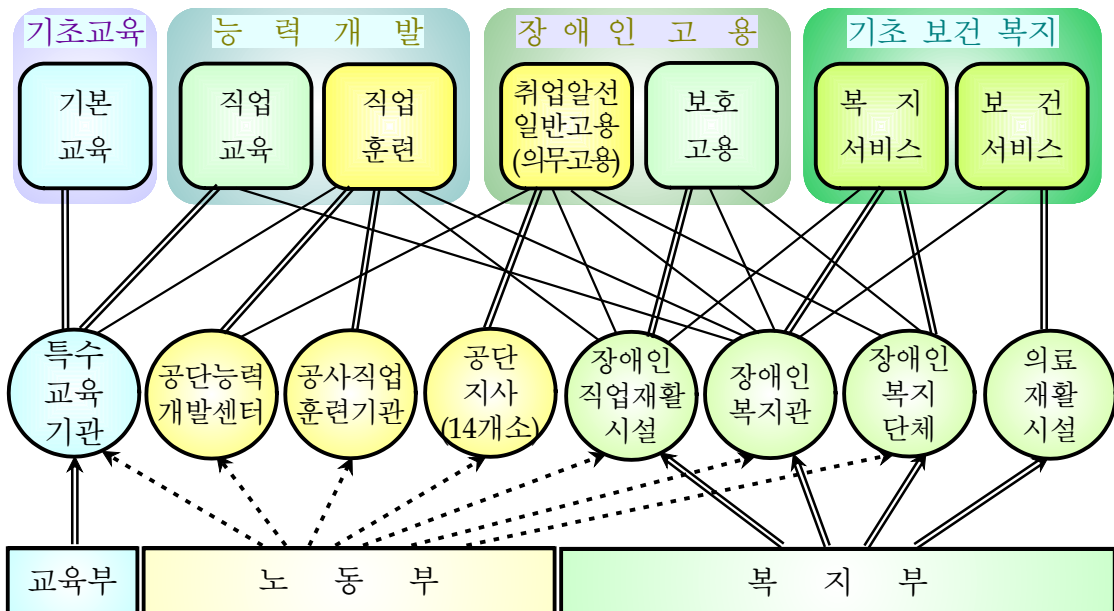
소관부처	실시기관	기관수(개소)	근거법률	재정지원	
	총계	529 (168)			
노동부	계	72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공단직영 직업능력개발센터	5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촉진기금	
	공공직업훈련시설	51 -	직업능력 개발법	산재기금, 고용촉진기금	
	지정직업훈련시설	14 -	개발법	고용촉진기금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시설	2 -	산재보험법	산재기금	
복지부	계	419 (168)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센터)	130 (37)	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고용촉진기금	
	장애인복지관(직업평가센터)	(6)			
	장애인복지단체	37 (37)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근로작업시설			24 -
		보호작업시설			144 (49)
		작업활동시설			65 (32)
직업훈련시설		11 (7)			
안마사 수련원	8 -				
교육부	계	38 -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	38 -	특수교육법	교육부	

주 : 1. 기관 수 중 괄호 안의 수치는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의 개소 수
 2. 교육부 소관 기관 중 특수교육기관 자체의 직업교육은 표시하지 않음
 자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지원종합대책. 2006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여 일반고용으로 전이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은 최소한 보호고용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일반고용으로 옮겨 자립하게 하는 장애인 분야에서의 생산적 복지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보호고용의 기능보다는 단순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락한 상황이다. 2005년도에 전국 직업재활시설 244개소의 일반고용 전이실적은 시설당 평균 1.7건에 불과한 것에서 이러한 직업재활시설의 보호시설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에서 전문적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전국 142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84개 실업고의 직업교육교사는 총 180명에 불과하고 실습공간·실습장비 등 직업교육시설이 부족하여 능력개발에 가장 적절한 시기인 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학교 졸업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전국 38개 학교에 설치된 전공과는 본래 목적인 직업교육보다는 중증장애학생들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림 12-2〉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예산 체계



주 : == 주기능 — 부기능 ==> 정부재정지원,> 고용촉진기금지원

자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지원종합대책, 2006

장애인 고용촉진사업과 관련한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은 근본적으

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일관성있는 통찰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고 전달체계를 난개발해 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수요자인 장애인이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공단)에서 구직등록 절차를 이중적으로 거쳐야 하며, 보다 더 넓게는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 고용률은 높지만 장애인은 고용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나라의 20세~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4.7%로서 OECD국가 전체의 평균(43.2%)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무고용기업의 평균고용률은 정부기관은 2.25%·민간기업은 1.49%(2005년 기준)로서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의무고용제 도입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고용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매우 높으며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외형적인 고용은 증가하였지만 장애인은 아직 고용서비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체계상의 한계와 프로그램의 미흡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2-5〉 장애인(20~64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

기준 년도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비 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대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대비(%)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대비(%)
2000년	1,079	44.5	116.3	122.6
2005년	1,627	49.4	143.0	179.0

- 주 : 1.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인 이상 있는 장애인 가구를 의미함.
 2. 2000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4,905원, 2005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3,291,671원임(통계청)
 3. 2000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928,398원, 3인 기준 738,076원, 2005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136,322원, 3인 가구 기준 907,929원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00년 및 2005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마. 고용촉진사업의 재원문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재원은 2%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주가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주된 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이전 정부 일반회계에서는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매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원에 그쳐왔다.³⁰⁾

2000년 이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급격히 수지가 악화되었다. 그 원인은 ①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8~'02년)에 따른 투자, ②장애인 범주 확대('99.3월)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급액의 급증, ③고용장려금 지급단가 대폭인상('00.7월), ④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00.10월) 등 정책 예측 오류와 방만한 사업운영에 있었다. 참여정부는 2004년도에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430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기금소진 위기에 대처하였고, 2005년 100억원, 2006년 200억원, 2007년 200억원 등 이전 정부에 비해 10배 수준의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에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사업의 목적인 장애인고용이 향상되면 고용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고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기금이 소진되는 구조적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재원안정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현재의 의무고용제 현실하에서 고용률 2% 달성에 치중하는 정책은 수단을 목적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비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난립 현상은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의 '동맥경화증'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전 면밀한 설계가 부족했고 일관된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제도를 손질하지 못했으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고용서비스를 부분적으로 확장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난개발”과 수요자인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불체감”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30) 2003년까지 정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은 매년 10억~30억원 수준에 불과하였고 고용촉진사업의 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주된 재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

제13장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새로운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전달체계(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를 둔 것은 장애인 고용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기관에서 고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 전문적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개발 실시 등 고용촉진과정 전체에 걸쳐 “장애”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그 결과 장애인 취업이 여전히 지난한 과제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 전문성과 특수성은 단순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니라 위탁주체이자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정책수립에 매우 유효한 경험과 안목을 생성한다. 어디가 문제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수립을 지켜보면서 참여정부가 가장 주력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장애인 고용촉진의 현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전달체계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었으며, 공단은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초안이 나온 2006년 3월 ~ 6월 사이에 초안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당시 계획작성기관이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직접 제시하였다. 공단의 의견은 10대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초 주무부처인 노동부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부부처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전례가 없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장될 뻔 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장애인 고용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공단 이사장을 만나고 공단이 제시한 의견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으며, 주무부처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무부처에서 2007년 작성한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 당초 공단에서 제시한 방안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로 나타났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도입, 해바라기 마을 건립 등 중증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 당초 공단이 건의한 내용이였다.

제14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과제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재설계의 첫 출발점 - 중증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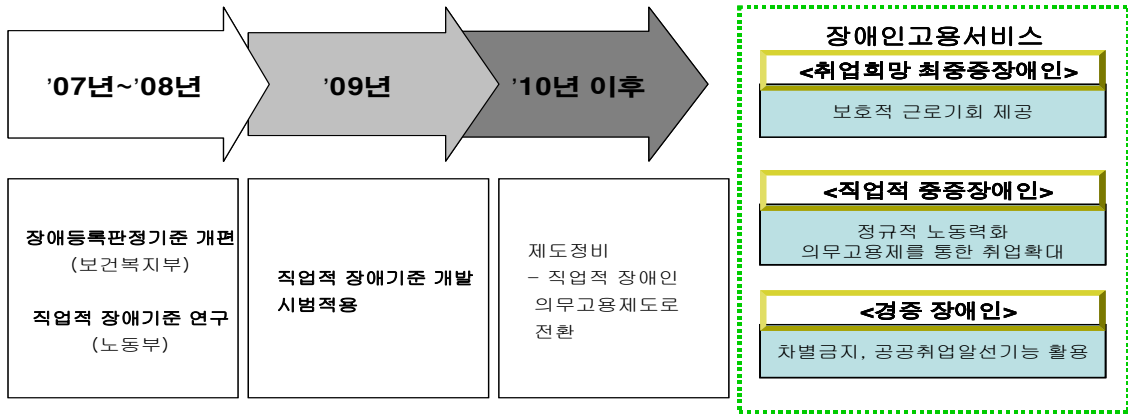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등록장애인 전체를 고용정책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의무고용제는 필연적으로 경증장애인이 좋은 일자리에 우선 취업하고 중증장애인은 정책효과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직업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에서는 장애인을 최중증·중증·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장애정도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적용대상인 '장애인'을 새로이 설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장애인의 근로능력(Work Ability)와 직업적 능력(Vocational Ability)에 기반을 두어 의학적·기능적·환경적·직업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새로운 장애 개념과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고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2008년에 걸쳐 의무고용제의 적용대상을 재설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2009년에는 새로운 전달체계(사례관리지원체계)에서 이를 시범 적용한 후 그 유용성을 검증·보완하여 2010년에는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직업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직업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에서는 직업적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정책대상으로 하여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정규 노동력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을 확대하며, 직업적 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은 고용지원센터 등 공공취업알선기능을 통해 취업을 유도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은 고용정책 타깃(Target)이 명확화 되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Specific) 정책수립과 집행여건이 마련됨으로써 현재 200여만 명의 등록장애인 전체를 감당하지 못한 의무고용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가진 장애인이 직업적 장애인으로서 고용서비스의 주된 대상이 될 것이다. 직업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자력취업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13-1〉 의무고용제 재설계 일정 및 장애정도별 고용서비스 계획



자료 : 노동부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2007

반면, 직직업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로의 전환이 시행될 경우, 고용률 하락·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고용장려금 지급액 감소에 따른 기업의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과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고용정책 타깃 설정과 보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설득하여야 할 것이다.

2.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서비스 전달체계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 담당하며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재 정부부처의 업무분담체계는 장애인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고 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난개발 양상과 병행하여 고용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정책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편,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고용서비스 사례관리가 미흡하고 통합된 고용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기능이 전무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복지 및 고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측면에서도 담당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인프라가 부족³¹⁾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31) 2007. 5월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15개 지사에 불과하여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지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2004년부터 지역별로 고용촉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시도해 왔지만, 아직 전국적인 고용서비스 연계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관 등 직업재활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단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공단 지사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며, 특수교육기관이나 재활병원 등 타 서비스 영역에 있는 장애인 역시 고용서비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단 지사를 별도 접촉하여야 한다. 즉,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 인프라가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공급자인 기관 중심으로 각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에 매우 불편한 구조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출발점인 장애인등록제도와 공단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연계가 거의 없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정책 단계에서 정책대상인 장애인 집단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용과 복지가 통합되고 연계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인 “사례관리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 사례관리지원체계는 고용분야를 담당하는 “통합고용지원팀”과 사례관리체계 작동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관리지원팀”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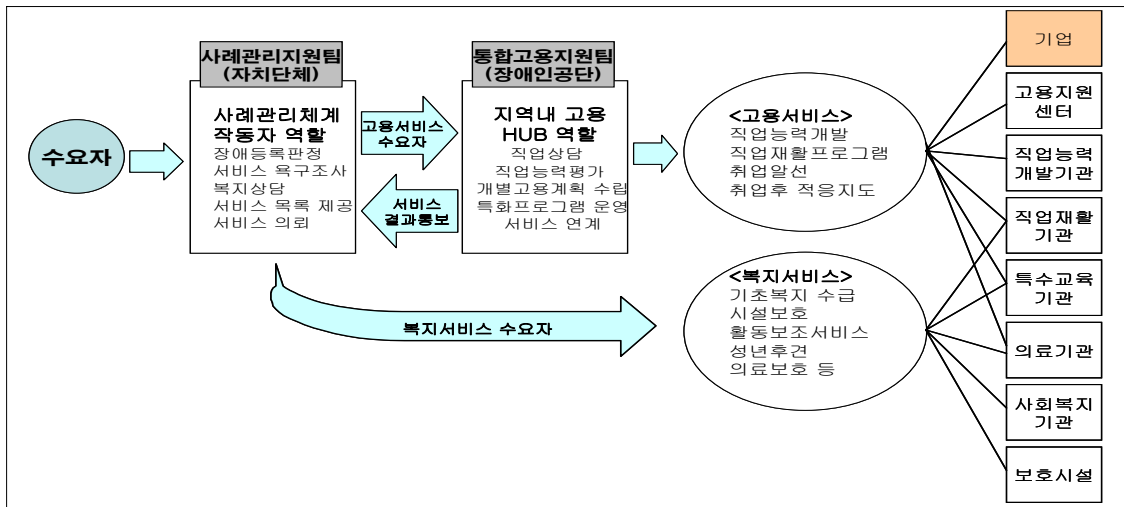
사례관리지원팀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장애등록 및 판정, 서비스 욕구조사(Need Assessment), 복지상담, 서비스 의뢰 및 연계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초기 작동자 역할을 맡게 되며, 통합고용지원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설치되어 지역사회 고용 HUB역할을 하게 된다. 사례관리지원체계는 사례관리지원팀과 통합고용지원팀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묶어 장애인들에게 복지와 고용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2007년 11월 1차 사례관리를 위한 모의적용사업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작되며,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10년에는 전국에 18개소의 통합고용지원팀이 설치되어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개별고용계획서(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작성,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계 등 각종 서비스 연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고용지원팀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직업능력평가사 300여명을 2007년~2009년 3년에 걸쳐 집중 양성하여 전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그 담당부처·서비스의 성격·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상관없이 일관된 흐름 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그 흐름은 각 서비스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될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일관된 체계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연계 및 의뢰함으로써 개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장애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라고 한다.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은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장애인 사례관리 체계에 편입시킴으로서 서비스의 단절을 예방하고 생애주기별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림 13-2〉 사례관리지원체계 모형



자료 : 노동부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 2007.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은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장애인 사례관리체계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양자택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지 않은 반대 또는 저항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예산상의 한계와 조직 확대에 대한 비판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며, 조직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ی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사례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이자 직업재활종사자인 이정철(35세,지체4급)씨는 다음과 같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좋은 서비스를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일임에 분명하지 않겠느냐……장애인에게 산적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서는 노동과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안은 그러한 통합적 접근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007년 통합고용지원팀 시범사업 개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고용지원팀”이라는 명칭을 갖고 2007년 11월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시범사업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실시되며, 해당인력은 장애인에 대한 심층적인 직업능력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인 직업능력평가사와 서비스 조정 및 연계를 담당할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통합고용지원팀은 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②장애인 개별 직업상담 및 고용계획서(IPE :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작성, ③진로지도·전환고용(Transition Employment)·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단기 직업전교육 등 중증장애인과 학령기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④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방식에 의한 취업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⑤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상호 서비스 의뢰가 가능한 고용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내 장애인고용의 허브(HUB)역할 수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적인 상담과 직업능력평가에 필요한 상담실과 각종 평가 장비를 완비하고,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통합고용지원팀은 복지관·훈련기관·장애인복지단체·직업재활기관 등 지역사회 장애인고용 관련기관과의 연계에 주력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 시 수요자인 장애인 측면에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동(Flow)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둘 것이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통합고용지원팀이 지역사회 고용 인프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난개발”된 고용 인프라를 “재개발”하는 것이다. 즉, 각 장애인 고용 관련 단체, 훈련기관, 그리고 장애인과의 연계를 원활히 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은 통합고용지원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의뢰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며, 이것은 국가 전체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수요자(장애인) 입장에서는 고용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 과정은 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가 시·군·구의 사례관리지원팀에서 출발하여 통합고용지원팀과 각종 장애인 서비스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단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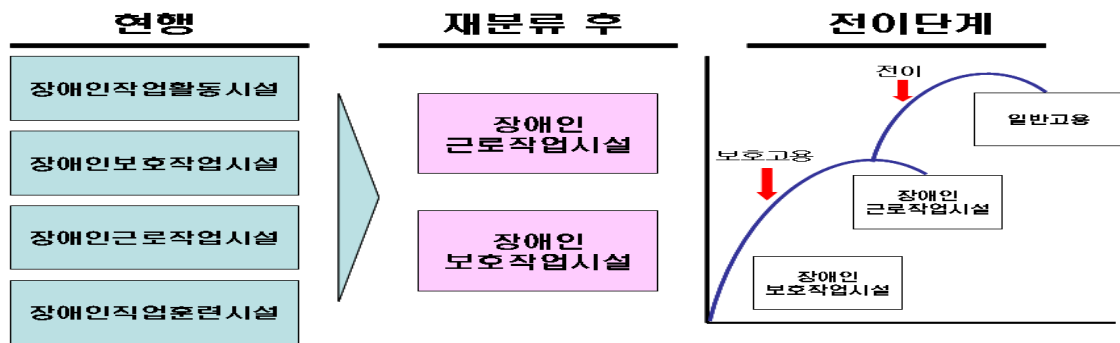
정부는 4단계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이 본래의 전이 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직업재활시설을 2종류로 단순화하여 근로작업시설과 보호작업시설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호작업시설을 중증장애인의 근로육구 충족 및 생산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장(場)으로 운영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유상적 임금을 제공하며, 나아가 근로작업시설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작업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작업장으로 육성하며, 나아가 일반고용으로 전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그 운영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근로작업시설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지원하게 되며, 2007년도에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을 재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확정하고 2008~2009년에 걸쳐 새로운 재분류 기준에 따라 기존 직업재활시설을 재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9분의 2 상당액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재분류된 근로작업시설은 현재의 보호시설 형태를 벗어나 수익을 창출하는 작업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하게 최종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직업재활시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3-3〉 직업재활시설 재분류 및 전이단계



그러나, 직업재활시설 재분류와 이에 따른 재원의 일반회계 전환의 실행과정에서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9분의 2 상당액의 지원을 받던 시설들의 반발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의 충실한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직업재활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시설의 장애인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전술(前述)한 직업재활시설은 당장 일반고용으로의 전이가 용이하지 않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고용정책이라면, 최중증 장애인과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경계영역에 있어 일반고용 가능성이 높으나 적절히 배려된 작업환경에서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시설·장비비용을 용자 또는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근로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선뜻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의 “렘플로이(Remploy) 공사”, 스웨덴의 “삼할(Samhall)”, 일본의 “태양의 집”은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이상적인 이념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최중증과 중증의 경계선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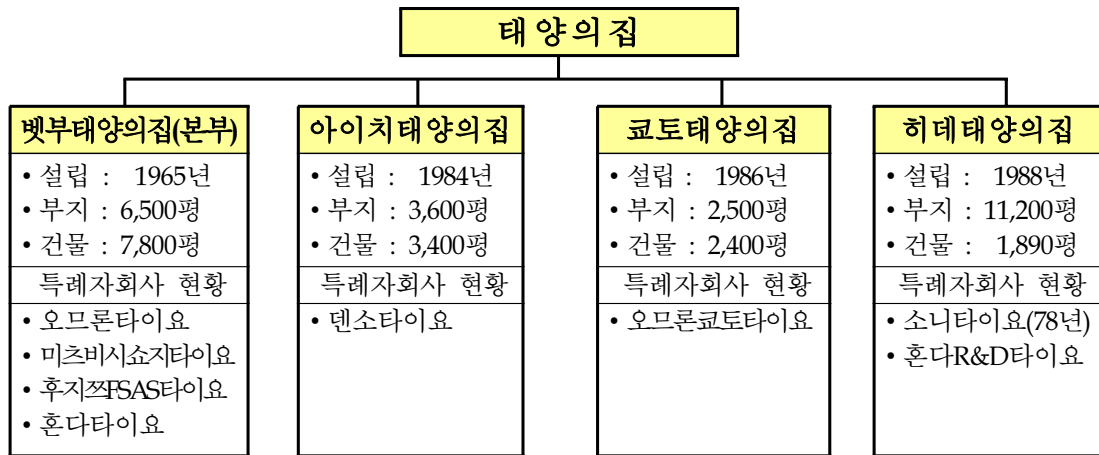
<일본의 태양의 집 사례>

“태양의 집”은 ‘장애인은 일을 통해 자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설립목적 아래 1965년 나카무라 유카타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벅부에 위치한 본부를 중심으로 4개의 태양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태양의 집은 소니, 혼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공동출자하여 8개의 특례자회사³²⁾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의 집 법인내의 특례자회사 및 협력기업에 장애인 1,082명, 비장애인 562명 등 총 1,644명이 근로하고 있다. 태양의 집은 장애인근로자의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및 작업환경 개선, 작업보조도구의 도입 및 적용을 통해 인력 양성·공급을 담당하고 입주기업은 일자리 제공, 제품생산에 관련된 기술·운동을 담당한다. 입주기업은 수익금중 일부는 태양의 집 시설사용료로 지급하며, 태양의 집은 이 시설사용료를 시설유지 비용으로 사용한다.

32) 일본에 특유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으로서 대기업(모기업)이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자회사의 장애인을 모기업에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기업의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이다. 특례자회사에 대한 설명은 후술한다.

〈그림 13-4〉 태양의 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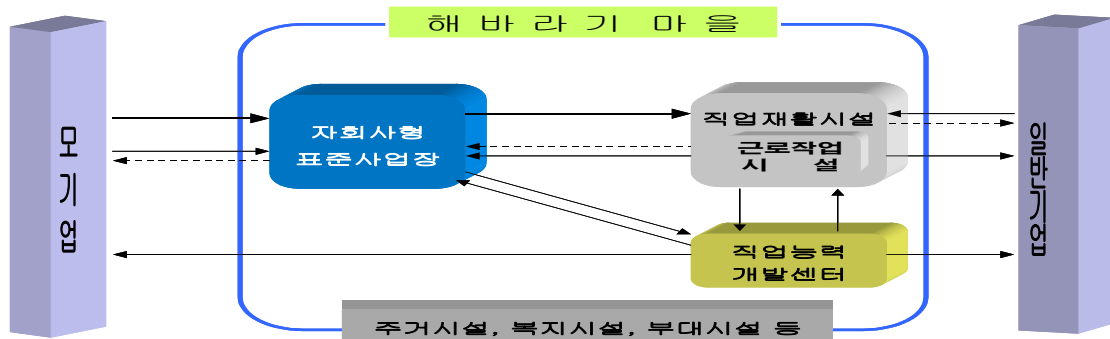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장애인고용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중증장애인 집단고용 모델은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비판의 소지도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증장애인 고용의 획기적 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고용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정책 제안이 동기가 되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로서 '해바라기 마을'의 설립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해바라기 마을은 사업장·주거시설·복지시설 등이 복합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지선정 및 협력기업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정부 주도로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13-5〉 해바라기 마을 개념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해바라기 마을에 대기업(모기업)이 투자하여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립하고 입주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사실상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별도로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모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려로서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는 사업주(모기업)가 장애인 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모기업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특례자회사는 장애인근로자 5명 이상, 장애인이 총 근로자수의 20% 이상이고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신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유형의 채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1976년 제도도입 이후 2004년까지 157개의 특례자회사에 약 5,700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02년 이후 특례자회사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업에 대한 언론공표, 적용제외율의 축소 및 철폐로 인한 의무고용인원 및 고용부담금의 증가, 특례자회사 설립기준의 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한다.

〈표 13-1〉 일본의 특례자회사 설립현황

년도	설립수	민간회사	제3섹터	사회복지법인
1980년이전	6	5	0	1
1981~1985	14	6	4	4
1986~1990	14	7	6	1
1991~1995	37	22	13	2
1996~2000	41	39	2	0
2001~2004	45	42	0	0
합계	157	121	25	8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모기업)가 50% 이상 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장애인, 그중 50%

이상이 중증장애인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요건은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에 비해 보다 중증장애인 고용이 더 강화된 것인데 이는 우리의 경우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가 보다 시급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도입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2007년 7월 개정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2008~2010년까지 최소 17개소 이상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바라기 마을의 설립에 대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그 비판의 일면적 타당성을 인정하고서도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의 획기적 돌파구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집단 고용하는 모델의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며, 해바라기 마을은 이 문제에 대한 첫 케이스가 될 것이다. 해바라기 마을의 설립과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연스러운 확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서는 해바라기 마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 비해 보다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편법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동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특례자회사 제도의 경우보다 장애인 고용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대기업(모기업)이 별도의 회사설립에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는 점,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된다는 점 등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 도입은 시급한 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 현장종사자로서 다년간 근무해 오고 있는 김민수(43세,○○복지관) 관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바라기 마을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두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난 감도 없지 않고, 오히려 양질의 직접고용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연계 고용제도까지 포함시켜 생각하자면 기업에게만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

반면 김성희(48세,○○대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인고용, 특히 중증 장애인 고용에 있어 이전까지 없었던 패러다임적 전환의 시도이며, 현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현실적 대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여부는 단지 이 단일 사업의 성패가 아닌, 과연 새로운 장애인 고용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중대한 도전이다” .

4. 장애인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현재 장애인 고용정책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외국의 우수한 제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조기에 도입하여 단기적 성과를 내려고 한 것, 전달체계의 전체적 효율성에 대한 조망이 없었던 것,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했던 점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우선 이러한 고용정책을 리모델링하는 첫걸음으로서 직업적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책대상(장애인 수요자)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정책 환경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난립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의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없이는 아무리 필요한 제도일지라도 제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고용과 복지가 아우러지는 사례관리지원체계가 완벽히 구축될 경우 현재의 서비스 중복과 비효율을 탈피하여 장애인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중증장애인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거 의무고용제의 효과가 경증 장애인에게 우선 나타나고 중증장애인은 고용의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던 현실에 대한 반성에 기반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정비,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인 해바라기 마을의 설립, 그리고 이러한 고용모델을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는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5 부 장애인 정책의 평가와 미래

과거에 장애인은 사회와 분리되어 보호받고 수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 되었고,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에 비하여 제한된 그 숫자와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가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던 의학적 패러다임에서 이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사회가 변화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점차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은 더 이상 사회와 떨어져 격리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비장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온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체인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도 장애를 숨기고 공동체로부터 피하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체적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출발점으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 복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한 관계부처가 하나의 비전아래 연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2003년부터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를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까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발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경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LPG차량 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고, 미흡하지만 장애인 고용정책의 진전으로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 복지발전의 토대구축을 넘어서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더 이상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수동적이고 차별받는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사회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인식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

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자·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 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

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적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 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

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

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멸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41호, 200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